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3호마목”을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5호”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를 “제2호의3서식
에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를 “제2호의3서식
에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를 “제2호의3서식
에 따른다”로 한다.

제25조 “제9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하
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
항을 준용한다.”를 “제2호의3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6조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27조 “제15조부터 제20조”를 “제13조부터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의 “징수유예의 신청”을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으로, 제2호의 “징수
유예의 신청에 대한 승인(거부)통지”를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기각)통지”로 제3호의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를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통지”로 한다.

제28조제2항 “제23조”를 “제10조”로, “납부최고서는”을 “독촉장은”으로
한다.

제29조 “제14조”를 “제9조”로 한다.

제30조제1호 “제24조”를 “제31조”로, 제30조제2호 “「국제징수법 시행
령」”를 “「국제징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9조”를 “제28조”로, 제3
0조제3호 “제25조”를 “제38조”로, 제30조제4호 “제26조”를 “제35조”로,
제30조제5호 “제29조”를 “제34조”로, 제30조제6호 “제34조”를 “제48조”
로, 제30조제7호 “제35조”를 “제26조”로, 제30조제8호 “제38조부터 제40
조”를 “제48조부터 제50조”로, 제30조제9호 “제41조부터 제43조”를 “제5
1조부터 제53조”로, 제30조제10호 “제50조”를 “제47조”로, 제30조제11호
“제51조 및 제52조”를 “제55조 및 제56조”로, 제30조제12호 “제53조 및
제54조”를 “제57조 및 제58조”로, 제30조제13호 “제56조부터 제60조”를
“제59조부터 제63조”로, 제30조제14호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
의2 및 제74조부터 제79조”를 “제66조부터 제93조”로, 제30조제15호 “제
80조부터 제84조”를 “제94조부터 제101조”로 한다.

제31조의 “채납처분유예”를 “압류·매각의 유예”로 하고, “제85조의2”를

“제105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체납처분유예의 신청: 별지 제24호 서식”을 “압류·매각 유예 신청: 별지 제24호의1서식”으로, 제2호 “체납처분유예의 신청에 대한 승인(거부)통지: 별지 제25호 서식”을 “압류·매각 유예 신청에 대한 (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의1서식”으로, 제3호 “체납처분유예의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 서식”을 “압류·매각 유예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의1서식”으로 한다.

제33조제1호 나목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다목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같은조 제3호의 “제38조”를 “제54조”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제2호의3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

식, 별지 제69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1 서식, 별지 제24호의1서식, 별지 제25호의1서식, 별지 제26호의1서식은 신설하며,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라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납부 고지를 한다.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 ④ (생 략) ⑤ (삭 제)
제3조(재산의 가액) ① (생 략)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 2. (생 략)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 및 권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3호마목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상의 총 취득금액	제3조(재산의 가액)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2. (생 략) 3.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5호----- ----- -----
제7조(조사절차 중지를 위한 소명)	<삭 제>

장기미상환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조사절차의 중지를 위하여 연간소득금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9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	제9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 ----- -----에 따른다

5항을 준용한다. 제22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제22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 ----- -----에 따른다.
제23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제23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 ----- -----에 따른다.
제25조(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법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제2항을 준용하여 징수	제25조(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 ----- -- 제6조제2항을 -----

하는 징수처분비의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호서식을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 ----- -----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
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이나 징수처분비를 제2차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 ----- 제7조를 ----- ----- ----- ----- ----- ----- -----.
제27조(징수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수유예의 신청: 별지 제24호서식 2. 징수유예의 신청에 대한 승인	제27조(징수유예) ----- ----- 제13조부터 제17조 ----- ----- ----- ----- 1.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 2.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에 대한 승

(거부)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징수유예의 취소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인(기각)통지: ----- 3.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통지: -----
제28조(독촉장 등) ① (생략) ②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u>납부최고서</u> 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독촉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0조를 ----- ----- ----- <u>독촉장은</u> ----- -----.
제2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 ----- 제9조 ----- ----- ----- -----.
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법 제32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인계·	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 ----- ----- ----- -----. 1. ----- 제31조를 ----- ----- 2. 「국세-----」 제28조를 -----

인수 및 인수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25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29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질물의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 나. (생략) 8. 「국세징수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 나. (생략) 9.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3. ----- 제38조를 ----- ----- 4. ----- 제35조를 ----- ----- 5. ----- 제34조를 ----- ----- 6. ----- 제48조를 ----- ----- 7. ----- 제26조를 ----- ----- 가. ~ 나. (현행과 같음) 8. ----- 제48조부터 제50조 ----- 가. ~ 나. (현행과 같음) 9. ----- 제51조부터 제53조 ----- -----
--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10. ----- 제47조 ----- -----
가. ~ 아. (생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11. 「국세징수법」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11. ----- 제55조 - 제56조를 -----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12. 「국세징수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12. ----- 제57조 및 제58조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3. 「국세징수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13. ----- 제59조부터 제63조 ----- -----
가. ~ 사. (생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14.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14. ----- 제66조부터 제93조 ----- -----

가. ~ 머. (생략)	가. ~ 머. (현행과 같음)
15. 「국세징수법」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15. ----- 제94조부터 제101조 -----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제31조(채납처분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85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31조(압류·매각의 유예) ----- 제105조를 - ----- -----
1. 채납처분유예의 신청: 별지 제24호서식	1. 압류·매각 유예 신청: 별지 제24호의1서식
2. 채납처분유예의 신청에 대한 승인(거부)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2. 압류·매각 유예 신청에 대한 (승인,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의1서식
3. 채납처분유예의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3. 압류·매각 유예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의1서식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9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p>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록자료</p> <p>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자료</p> <p>라. (생략)</p> <p>2. (생략)</p> <p>3.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p>	<p>설립에 관한 법률」-----</p> <p>-----</p> <p>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p> <p>-----</p> <p>라.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 제54조-----</p> <p>-----</p>
<p>제34조(기한의 연장)</p> <p>법 제4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기한 연장의 신청: 별지 제83호서식</p> <p>2. 기한 연장의 승인 및 기각의 통지: 별지 제84호서식</p> <p>3. 납부기한 연장의 신청: 별지 제85호서식</p> <p>4.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 및 기각 통지: 별지 제86호서식</p>	<p><삭제></p>

<p>5.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별지 제87호서식</p>	
-------------------------------------	--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

성 명 :
주 소 :

귀하께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며, 년 월 일 현재 졸업 후 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미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제 호)에 해당되어 장기미상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귀하(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확인된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 인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귀하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아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고지됩니다.

$$\text{의무상환액} = [\text{소득인정액} - \text{상환기준소득인정액}] \times \text{상환율}^4$$

$$= [(\text{소득} + (\text{재산} - \text{부채}) \times \text{소득환산율}^1) - (\text{상환기준소득}^2 \times \text{배수}^3)] \times \text{상환율}^4$$

- 1) 소득환산율 :
- 2) 상환기준소득 :
- 3) 배수 : 미혼자 1.5배, 기혼자 1.8배, 부부 모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2배
- 4) 상환율 : 학부 대출원리금 잔액이 있는 경우 20%, 대학원 대출원리금 잔액이 있는 경우 25%, 학부 대출원리금 잔액과 대학원 대출원리금 잔액이 모두 있는 경우 25%(다만, 의무상환액이 대학원 대출원리금 잔액을 초과할 경우 20%로 적용함)

고지된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하게 되며,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일,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자발적 상환 계좌 유효기한까지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를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중지됩니다.

귀하께서 조사 제외 또는 중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원 이상이며, 아래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먼저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하신 의무상환액은 조사 제외 또는 중지를 위해 상환해야 할 금액에 포함됩니다.

※ 자발적 상환 계좌 : (계좌유효기한 : 년 월 일)

그 밖에 재산 등 조사 및 의무상환액 결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조사관 (☎)에게, 장기미상환자 판정 및 자발적 상환 방법에 대하여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생략)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	
원천공제기간	

통 지 내 용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원천공제의무자	
소득구분	의무상환액	원천공제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근로소득	원 (매월 원)		
사업소득	원 (매월 원)		
연금소득	원 (매월 원)		
합 계	원 (매월 원)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① 자발적 상환액 차감 전 의무상환액	② 년 자발적 상환액	의무상환액 = Min{[(①-②), 통지한도액]}
* 통지한도액 = 대출잔액 - 통지 · 고지된 의무상환액 미납액			

1. 귀하는 년에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소득의 변동에 연계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주인 원천공제의무자는 매월 분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며,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 2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3. 귀하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과 귀하가 원천공제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귀하가 . . .까지 아래의 계좌번호로 원천공제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귀하가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했으나 . . .까지 2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을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4.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동되는 경우(퇴직 포함)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 퇴직 없이 원천공제의무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5.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거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의무상환액은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 · 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미리 납부할 경우 납부할 금액	납부할 계좌번호
년 월 일	전액 납부 시 (원)	
세 무 서 장 직인	분할 납부 시(1회차2회차) (원)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자 ○○○(☎) 또는 국제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원천공제통지서(갑)
(원천공제의무자용)

원천공제 의무자	법인명(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원천공제기간		
통지 내용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매월 원)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매월 원)
	연금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매월 원)
	합 계	원(매월 원)
<p>1. 해당 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원천공제의무자"라 함)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채무자의 근로소득 등의 변동에 연계한 의무상환액을 매월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및 월별 원천공제 금액 등은 2쪽 참고)</p> <p>2. 또한, 채무자에게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퇴직소득의 20%(단,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공제)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p> <p>3.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이 변동되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통지될 수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공제한 의무상환액은 공제한 월의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p> <p>※ 원천공제 상환금명세서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할 금액은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p> <p>4. 채무자의 퇴직 없이 원천공제의무자가 변동되는 경우(인사이동, 법인의 인수·합병·분할, 사업의 양도·상속 등)에는 변경된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p> <p>5.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하지 않거나 원천공제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p>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부할 계좌번호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또는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통지서 재증

납부통지 내용

납부통지서

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40조에 따라 다음 채납자의 제2차납부의무자(양도담보권자)입니다.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연월	소득구분	발행번호
채무자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상호(성명)	계좌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귀속 연월	교육부 소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구분	의무상환액	연체금	합계	납부기한			
	①				년 월 일 까지			
	②				의무상환금액			
	③				연체금액			
()에 귀속되는 ()로서 ()에 따라 채무자에게 고지된 위 의무상환액 중 ()원이 체납되어 연체금 ()원을 더한 금액을 적용한 ()원이 귀하께서 납부하실 금액입니다.								
이 납부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위 금액을 위 계좌번호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납부 방법(납부가능시간: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한 전자납부
-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무통장 입금(계좌이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공과금이 아니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창구 납부는 무통장 입금형식(계좌이체)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납부고지서로는 금융기관 창구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00일
------	-----	------	-----

납부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단위: 원)

납부할 의무상환액의 내용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납부통지분	통지연월	소득구분	납부기한	의무상환액	의무상환액	
고지분	고지연월	소득구분	발행번호	납부기한(독촉기한)	의무상환액	연체금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단위: 원)					
횟수	소득구분	납부기한	분납금액	의무상환액	연체금
1회					
2회					
3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 및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부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매각 유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00일
------	-----	------	-----

납부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단위: 원)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체납액		
고지연월	소득구분	발행번호	납부기한(독촉기한)	의무상환액	연체금	계	의무상환액	연체금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단위: 원)						
횟수	고지연월	소득구분	납부기한	분납금액	의무상환액	연체금
1회						
2회						
3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77조제4항에 따라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부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승인, 기각) 통지**

귀하의 납부기한등 연장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납부자	성명 (상 호) 주소 (사업장)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		승인여부					
승인(기각) 사유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의무상환액의 내용 (단위: 원)							
고지·통지 연월	소득구분	발행번호	납부기한	계	의무상환액	연체금	
납부기한등 연장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횟수	고지·통지 연월	소득구분	발행번호	납부기한	계	의무상환액	연체금
합계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관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기관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귀하의 압류·매각 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77조제4항)

납부자	성명 (상 호) 주소 (사업장)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		승인여부					
승인(기각) 사유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고지 연월	소득구분	발행번호	납부기한	계	의무상환액	연체금	
압류·매각 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횟수	고지 연월	소득구분	발행번호	납부기한	계	의무상환액	연체금
계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관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안내문) 재증

독촉 내용

오른쪽 독촉장에 적힌 의무상환액이 체납되었으니 독촉납부기한까지 이 독촉장 또는 이미 발송받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오른쪽 계좌번호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장기미상환자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지된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상한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서도 상환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이 독촉장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연월	소득구분	발행번호
성명(상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귀속연월	교육부 소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주소(사업장)				

독촉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계	년	월	일까지 금액
	년	월	일까지 금액

위 금액을 위 계좌번호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납부 방법(납부가능시간: : ~ :)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한 전자납부
2.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3.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무통장 입금(계좌이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공과금이 아니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창구 납부는 무통장 입금형식(계좌이체)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독촉장으로는 금융기관 창구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체납 건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안내문) 재증

독촉 내용

귀하는 다음 채무자의 로서 오른쪽 독촉장에 적힌 금액을 독촉납부기한까지 이 독촉장에 따라 오른쪽 계좌번호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납부의무자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된 납부자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1.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연월	소득구분	발행번호
상호(성명)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귀속연월	교육부 소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업장(주소)				

독촉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의무상환액			
연체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0조제1항			
연체가산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0조제2항			
계			
년 월 일까지 금액			
년 월 일까지 금액			

위 금액을 위 계좌번호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납부 방법(납부가능시간: : ~ :)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한 전자납부
2.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3.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무통장 입금(계좌이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공과금이 아니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창구 납부는 무통장 입금형식(계좌이체)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납부최고서로는 금융기관 창구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체납 건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통지서**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다만,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한이 지날 때까지 상환액을 확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

납부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연월일	년 월 일	조서작성연월일	년 월 일	
압류의 사유				
압류에 관계된 의무상환금의 내용				
소득구분코드	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체금	

.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29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처분 인계(인수·인수 거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아래 체납액의 체납처분을 인계(인수·인수 거절)합니다.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 주소 또는 거소			
	현 주소 또는 거소			
재산의 표시				
인계(인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코드	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체금	

.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30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압 류 조 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압 류 연 월 일		
압 류 재 산 의 표 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 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 체 금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가 참여한 가운데 압류하였으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34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 근무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질 물 인 도 요 구 서

질권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인도 연월일			
인도 재산의 표시			
인도를 요구하는 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48조에 따라 질물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질권자) 귀하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갑)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 류 일	년 월 일	압 류	
압 류 재 산 의 표 시			
가압류(가처분) 당시의 소유자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가압류채권자(가처분신청인)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가압류(가처분) 결정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코드	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 체 금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35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을)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압 류 일	년 월 일	압 류	
압 류 재 산 의 표 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코드	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 체 금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 신청 자격 종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채납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사업장 소재지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사용 또는 수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사용하거나 수익할 재산의 종류 표시				
사용 또는 수익 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 권 압 류 통 지 서(갑)

1. 아래와 같이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채권자 (채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의 내용			
소득구분코드	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체금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38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 권 압 류 통 지 서(을)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채권자 (채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채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 류 채 권 의 표 시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코드	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 체 금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 산 압 류 통 지 서

1.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소 또 는 거 소			
채 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 류 재 산 의 표 시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 코드	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 체 금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40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

아래 재산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액에 대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었으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인도를 명합니다.

체납자	성 명(상 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사업장 소재지	
인 도 하 여 야 할 재 산 의 표 시		
인 도 기 일	년 월 일까지	
인 도 장 소		
인 도 를 명 하 는 이 유	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압류해제조서

체납자	성 명(상 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사업장 소재지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	----------

압 류 재 산 의 표 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 코드	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 체 금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했던 것을 로 인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세무서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 류 해 제 통 지 서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했던 것을 로 인하여 년 월 일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체 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 류 재 산 의 표 시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 코드	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 체 금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교 부 청 구 서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59조에 따라 아래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2. 「민사집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체 납 자	성 명(상 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사업장 소재지				
교부청구금액	금	원정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 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월	의무상환액	비고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 체 금		
배 당 액 입 금 의 회 계 좌	개설은행	예 금 · 적 금 명 칭			
	계좌번호				
	사용인감	예 금 명 의 인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44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 통지서(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가압류함을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참가압류재산의 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코드	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 체 금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45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 통지서(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가압류함을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참 가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참가압류기관
참 가 압 류 재 산 의 표 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코드	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 체 금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46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해제일		년 월 일		
압류해제 사유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소득구분코드	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체금	

붙임: 압류해제조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

아래와 같이 인도하겠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인도장소				
인도일		년 월 일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소득구분코드	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체금	

- 붙임 1. 압류재산 보관증(제3자 보관)
 2. 압류재산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제3자 보관).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상 호)		주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또는 거 소			
참 가 압 류 재 산	종 류			
	수 량			
	품 질			
	소 재 지			
인 수 장 소				
인 수 연 월 일		년	월	일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권 설 정 서

수입인지 ①

본인의 소유인 위 증권에 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국세징수법」 제7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재산입찰 보증금에 대응하고자 질권을 설정합니다. 본인(또는 입찰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계정에 귀속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질권설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①

세 무 서 장 귀하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 매 통 지 서

아래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75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수신자	성 명			
	주 소			
채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공매재산의 표시				
공매공고 연월일	년	월	일	공고
공 매 장 소	공 매 방 법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경매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회차	입찰일시(기간)			매각예정가격
	기일입찰	기간입찰		
1 회차				
2 회차				
3 회차				
4 회차				
5 회차				
6 회차				
수의계약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코드	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체금	

유의사항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2. 통지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 전에 채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8조에 따라 공매를 취소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51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공매, [] 수의계약 대행의뢰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의뢰합니다.

채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또는 거 소 (법 인 은 본 점)			
	사 업 장 소 재 지			
매각재산의 표시	사 업 의 종 류		종 목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월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의무상환액 연 체 금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52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공매, [] 수의계약 대행통지서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 하도록 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주 소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사업장)		
재 산 압 류 의 표 시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공 매 대 행 기 관			
명 칭 (지 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 끝 ·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53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압류재산의 내용					
소 재 지		종 류			
수 량		품 질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	연도/월	납부기한	의무상환액	연 체 금	비 고
참 고 사 항					

· 끝 ·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54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아래의 사람에게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55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 의 계 약 통 지 서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하겠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주 소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 예정가격			
수의계약 연월일		년 월 일	
수의계약 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소득구분 코드	관리번호	연도/월	의무상환액
소득구분	납부기한	계	연 체 금

* 다만, 수의계약 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을 중지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56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 각 결 정 통 지 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 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 명		생 년 월 일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매 각 재 산 의 표 시				
매 각 금 액				
매각 금액 납부 연월일				
년 월 일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승()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 수 대 금 납 부 최 고 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의무상환액 체납처분에 따라 귀하가 매입한 아래 재산의 매수대금을 아래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매도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매 각 재 산 의 표 시				
납 부 할 금 액	금	원정		
당 초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최 고 기 한		년	월	일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귀하의 계약보증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계정에 귀속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승()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매 각 결 정 취 소 통 지 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매수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매 각 재 산 의 표 시		
매 각 결 정 취 소 근 거		
<input type="checkbox"/> 체납자의 체납액 등 완납 <input type="checkbox"/>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		
매 각 결 정 취 소 연 월 일		

※ 귀하의 계약보증금은

[] 국세징수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귀하께 반환됩니다.

[]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계정에 귀속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등 기 청 구 서

※ 신청 자격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일
등 기 청 구 인	성 명(상호)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소(소재지)			
체 납 자	성 명(상호)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소(소재지)			
재 산 의 표 시				
매 각 결 정 연 월 일	년	월	일	
대 금 납 부 연 월 일	년	월	일	
납 부 금 액	금			원 정
등 록 세	금			원 정

위와 같이 공매에 따라 본인이 매수하였으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별도 첨부서류

등록세 금 원정(영수증)

- 60 -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 매각 통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수 권리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계 약 일			
재 산 의 표 시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공 매 연 월 일		년	월 일
매 각 결 정 일 과 금 액		년 월 일	매각결정금 원정
공매에 의한 매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국유(공유)재산 매수대금 지불금 잔액 금 원정 년 월 일 납입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 분 계 산 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각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되는 의무상환액						
채 권 자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금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지급일	비 고
기타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 분 금 전 예 탁 통 지 서

아래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2조 및 「국세징수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채권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또는 거 소			
채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또는 거 소			
배 분 금 액	금 원 정			
예 탁 장 소				
예 탁 일	년 월 일			

첨부서류: 배분계산서 등본 통.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승() - 63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삭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상호)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소재지)			
소득구분				
귀 속 연 월	년	월	일	
당 초 기 한	년	월	일	
연장받으려는 사유				
연장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한 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별도 첨부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소득구분에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소득, 증여소득 등 기한 연장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소득구분을 적습니다.

기 관 명 삭제

수신자
(경유)

제 목 기한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납부자)	성 명	
	주소 또는 영업소	
	상 호	
통 지 내 용		
소득구분		
귀속 연월		
당초 기한	년 월 일	
연장(승인·기각) 사유		
연장한 기한	년 월 일	

. 끝.

발 신 명 의

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전송() - 65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삭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상호)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소재지)			
납부할 상환금의 내용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소득구분	당초 납부기한	금 액		
연장받으려는 사유				
연장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		
횟 수	소득구분	납 부 기 한	금 액	
1 회				
2 회				
3 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별도 첨부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66 -

~~기 관 명 삭제~~

수신자
(경유)

제 목 납부기한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납부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상 호	업 종		
통 지 내 용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상환금의 내용				
소득구분		당 초 납 부 기 한	금 액	
연장(승인·기각)사유				
연장 하는 기 한		년 월 일		
분 납 금 액 및 납 부 기 한				
회 수	소득별 상환구분	납 부 기 한	금 액	
1 회				
2 회				
3 회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주소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전화()	전송()	홈페이지주소
- 67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삭제~~

수신자
(경유)

제 목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서

귀하에게 . . . 통지(승인)한 납부기한 연장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 및 「국세기본법」 제6조의2에 따라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납부자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재지			
	업 태	종 목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는 상환금의 내용				
소득구분		납 부 기 한	금 액	
연장한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취소 연월일				
취소의 이유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주소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전화()	전송()	홈페이지주소
- 68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의안 소관 부서명 >

대학재정장학과	
연 락 처	044-203-6271